

『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·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 및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(안 제1조, 제2조제4항)
 - 상위 법령을 「도로법」 제66조로 명시
 -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
-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(안 제4조)
 - 공익사업, 소상공인,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
- 점용료의 반환 조항을 신설(안 제5조)
 -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나 변경, 천재지변이나 과오납 등이 발생한 경우 점용료를 반환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장
- 표준안에 따른 변상금,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(안 제7조, 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,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 법령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·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(안 제2조제4항)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(주민부담 경감)
- (안 제4조)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 - 공익사업, 소상공인,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
- (안 제5조)점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 -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나 변경, 천재지변 등의 경우 점용하지 않은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, 과오납된 점용료 이자 가산하여 반환
- (안 제7조~제8조) 변상금징수,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상위 법인 「도로법」이 전부개정(2014. 7.15)됨에 따라,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, 규제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조례 중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되는 규정을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